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선 부담

토록 규정(비용예치)하고 있어, 비용 모금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사업지연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안전진단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하는 것을 임의규정화하고,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구청장이 先 지출 후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후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총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할 경우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해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